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 C R 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471호

의 안 명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2. 6. 27.

주 문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 지방자치단체(17개)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6월 27일

위 원 안 성 욱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욱

위 원 박 상 희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성 문

위 원 손 난 주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별지〉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

202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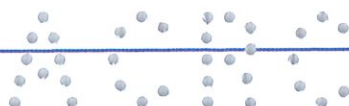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ACRC

순서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4
1.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골프장 예약 관행 존재	4
2.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의 위법행위 성행	7
3. 골프대중화에 반하는 부당한 골프장 운영	9
4. 군 골프장 운영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운영	11
IV. 개선방안	14
1. 골프장 예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14
2. 골프대중화를 위한 합리적인 골프장 운영 방안 마련 ..	15
3. 군 골프장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16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7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약 사전선점 등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예약 관행 만연

* '21.11월 권익위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결과, 최근 3년('19~'21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총 920건이고, '21년 610건으로 급증 추세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9년) 94건 → ('20년) 216건 → ('21년) 610건

※ 주요 민원 내용 : 불공정한 예약 사전 선점, 예약 공정성 감독 요청 등

- 형식은 대중골프장이면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전에 예약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21.4.23. 국민신문고)
- 전국 골프장에서 공정한 예약을 시행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 요청('20.12.3. 국민신문고)

-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의 위법한 대중골프장 회원모집, 예약사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발생 우려

- ○○도는 회원대우를 미끼로 계열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등을 분양하면서 이용예약 우선권과 회원 수준의 이용료 혜택을 제공한 대중골프장들에 유사회원제 시정을 명령('21.11.9. 언론보도)
- 예약대행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하고 요금을 선입금 하였으나, 예약대행자가 예약만 해놓고 결제하지 않고 잠적('21.9.23. 국민신문고)

- 이에,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22.1.~4.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22.5.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22.6.

II. 제도 현황

□ 골프장의 종류

-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체육시설로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

* '22.5.3. 체육시설법 개정('22.11.4. 시행)으로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되어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명칭 변경 예정.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갖춘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별도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

- (회원제 골프장)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골프장
- (대중골프장) 골프의 대중화를 위하여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 일반 대중을 위한 골프장

- 사업주 부과 : 이전 대중 골프장 사업주에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이 회원제 골프장의 1/3, 1/10 수준임('20년 기준 재산세에서 대중골프장 전체 연간 약 5,700억원 가량의 세제 혜택)
- 이용자 부과: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총 21,120원의 세금 면제('20년 기준 대중골프장 전체 연간 약 6,344억 원의 세제 혜택)

□ 골프장 현황

- 국내 골프장 수 : 총 512개

- '20년 기준 회원제 골프장 158개, 대중골프장 354개

※ 회원제 골프장 : ('17년) 194개 → ('20년) 158개로 18.6% 감소

대중골프장 : ('17년) 294개 → ('20년) 354개로 20.4% 증가

(단위 : 개소)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488	493	487	512
회원제	194	190	177	158
대중	294	303	310	354

<'20년 문체부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분석자료 및 권익위 실태조사>

○ 국내 골프 인구: 470만 추산

- 골프의 대중화로 국내 골프인구는 증가 추세

※ ('17년) 386만명 → ('20년) 470만명으로 21.8% 증가

(단위 : 만명)

구분	'13년	'15년	'17년	'20년
골프인구	355	399	386	470

<'21년 1월 국회 대중골프장 관련 정책토론회 자료>

□ 골프장 이용(예약) 관련 규정

- (대중골프장) 체육시설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대중골프장 운영자는 예약순서대로,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를 규정

* 제21조제2항 :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또한 체육시설법 제21조제3항에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회원 모집, 이용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 (회원제 골프장) 체육시설법상 규정은 없고, 회칙 등에 따라 회원은 골프장 우선 이용권 등의 권리를 가짐

□ 골프장 예약 관련 판례(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6987 판결)

- 회원제 골프장의 부킹권 판매를 배임수재죄로 인정한 판례

(판결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부킹권을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사례

(이유)...회칙, 약관 등에 의하여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되지 않고 남는 물량이 있는 경우 이를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예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골프클럽에 대한 신뢰와 평판, 회원권의 시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Ⅲ. 문제점

1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골프장 예약 관행 존재

□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등을 통한 국민들의 이용권 침해

- 대중골프장 운영자에게는 이용자가 예약 순서대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체육시설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 시 시정명령, 미이행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가능

- 그러나 대중골프장에서의 예약 사전 선점, 예약 공정성에 대한 감독 요청 등에 관한 민원* 다수 발생

* 최근 3년간('19년~'21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골프예약 관련 민원은 920건, '21년 610건으로 급증 [('19년) 94건 → ('20년) 216건 → ('21년) 610건]

《 주요 사례 》

■ 대중골프장 예약을 위해 예약 시작 시간인 9시 정각에 접속하였는데 9시에 오픈된 예약건수가 전체 120건 중 2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예약도 3초 만에 끝나버렸음. 형식은 대중골프장이면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전에 예약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21.4.23. 국민신문고)

■ 대중골프장 예약을 위해 예약 시작 시간인 9시에 접속하였는데 이미 골프장의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예약창이 열림.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아예 예약시간 자체가 없다는 건 이미 골프장 자체 또는 누군가가 그 예약을 가져갔다고 생각되므로, 전국 대중골프장에서 공정한 예약을 시행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 요청('20.12.3. 국민신문고)

- 공공 대중골프장에서도 끼워넣기 방식의 불공정한 예약 사례 발생

《 주요 사례 》

■ '끼워넣기' 골프장 부정예약... 매립지공사 직원들 벌금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을 지역단체 대표 등이 이용할 수 있게 '명단 끼워넣기'를 한 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21.10.19. 언론보도)

□ 회원제 골프장의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회원의 이용권 침해

-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회칙, 약관 등에 따라 우선적 예약 기회 등을 보장 받음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회원들은 회칙, 약관 등에 의하여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되지 않고 남는 물량이 있는 경우 이를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비회원 예약을 위해 예약을 선점하는 사례 발생

※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 이용시 회원가의 통상 3배 이상 이용요금이 책정되어 비회원을 위한 예약 사전 선점 발생

《 주요 사례 》

- 회원제 골프장에서 하루 80여 팀의 부킹 시간 중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겨우 1/4만이 회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는 비회원들이나 외부인들 단체팀에 배정하고 있음.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을 무시하고 부킹권들을 비회원이나 단체들에 임의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 요청('20.11.25. 국민신문고)
-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예약은 전화로만 되도록 운영하면서, 인터넷 부킹 대행 서비스 상으로는 버젓이 비회원 예약을 받고 있는 등 예약 시스템 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사 요청('21.1.29. 국민신문고)
- 충북도·청주시 ○○골프장 현장조사
현장조사에서 골프회원권 추가판매·골프 예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좋은 시간대에 비회원 위주로 예약한 사례를 일부 확인('22.2.17. 언론보도)

- 회원제 골프장이 예약권을 불법 유통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사례 까지 발생

《 주요 사례 》

- 기존 회원만 봉? ○○CC, 부킹권 불법유통 의혹
○○골프장이 부킹대행업체를 통해 20만원짜리 이용권을 유통시켜 수억 원에 회원권을 구매한 기존 회원들 피해('20.6.18. 언론보도)



□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골프장 예약으로 이용권 침해

- 매크로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을 선점한 후 골프장 이용권을 재판매하는 사례 발생

* 매크로 프로그램 :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시도하기 때문에 사람의 접속 시도가 거의 통하지 않음

- 매크로 프로그램 등은 정상적인 예약 시스템 접속을 어렵게 하여 국민들의 골프장 예약을 불가능하게 함

《 주요 사례 》

- 군 골프장 예약 시 일부 동호회 및 개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소티나 잔여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회원 비회원 멤버를 모집하여 이용하거나 동호회 내에서 돌아가며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21.12.30. 국민신문고)
- 골프장 예약시스템 이용시 접속자수 폭주로 인해 속도가 엄청 느려져 예약이 어려운데, 예약시스템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하여 홈페이지 속도를 엄청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접속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 이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21.8.30. 국민신문고)
- 골프장 편법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확산 대책 시급
코로나 상황으로 부킹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차익을 노리고 높은 금액의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위가 성행('22.3.24. 언론보도)
- ○○지역 골프장 예약 '하늘의 별따기'
최근 골프장 이용객이 급증하자 불법 매크로 등을 이용해 골프장의 황금 시간대를 예약한 뒤 골프장 예약 사이트의 양도 게시판에 글을 올려 웃돈을 받고 예약권을 판매하는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음. 한 IT업계 종사자는 "올해 들어 골프장 예약 매크로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세 차례나 받았다"고 말함('20.11.10. 언론보도)

□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 대중골프장까지 회원 모집

- 대중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회원 모집이나 이용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체육시설법 제21조제3항에는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의 회원모집, 이용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가능

- 그러나 예약대행업체가 대중골프장과 공모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우선권을 제공하는 위법한 사례 발생

※ 예약대행업체는 관광상품, 숙박시설 등과 연계한 회원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명 ‘멀티회원권’ 등을 판매

《 주요 사례 》

■ 충남 소재 대중골프장인 ○○CC와 회원권 판매업체 A사 등이 제휴카드 회원을 모집(‘21.11.8. 언론보도)

■ ○○골프, 보증금 없앤 무기명 회원권...부킹 걱정 없고 비용도 저렴
최근 코로나19로 부킹 전쟁과 그린피 폭등으로 골퍼들 불만이 쌓이는 가운데 편리한 부킹과 그린피 혜택을 주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골프의 무기명 골프회원권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고 있음(‘21.7.6. 언론보도)

※ 회원 모집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 포함

■ 무늬만 ‘대중제’인 유사 회원제골프장 꼼수영업 철폐

경북도는 사실상 회원대우를 미끼로 계열사와 연계한 관광상품이나 콘도미니엄, 택지 등을 분양하면서 이용예약 우선권과 회원 수준의 이용료 혜택을 제공한 대중골프장들에 유사회원제 시정을 명령(‘21.11.9. 언론보도)

□ 골프장 예약 관련 사기 성행

- 코로나로 해외 골프여행이 차단되면서 국내 골프장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골프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
- 이를 이용한 예약대행업체의 골프장 예약 관련 사기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
 - ※ 가짜 골프 회원권 판매, 선입금 받은 후 잠적, 예약만 해놓고 추가 결제 유도 등 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

《 주요 사례 》

- 여행사를 통하여 골프예약을 하였는데, 예약금을 입금한 후에도 예약이 안 되어 있어 환불요청 하였으나, 환불을 안 해줌('21.12.29. 국민신문고)
- 선입금 조건의 골프장 예약 대행 문자를 보고 예약 대행을 요청하고 요금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예약대행업체가 예약만 해놓고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추가로 결제하였고,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예약 대행자는 잠적함('21.9.23. 국민신문고)
- 가짜 골프장 회원권으로 30억원 챙긴 일당 검찰 송치
골프장 회원권을 싸게 주겠다고 피해자 46명에게 접근한 뒤 가짜 회원권을 판매해 30억원 가까이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짐.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골프 회원권 거래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21.11.9. 언론보도)
- “골프장 예약 싸게 해줄게” 40대女 선입금 받고 잠적... 피해자 속출
골프장 예약을 싸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가로챈 40대 여성이 잠적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21.10.8. 언론보도)
- 몇천만원에 골프장 수십 곳?... ‘입회금 돌려막기’로 버티는 사기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 회원권거래소 대표는 신규 가입자의 돈을 기존 회원의 골프장 사용료로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고, 회원들은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17.8.3. 언론보도)

□ 카트 이용료에 대한 골프장의 폭리행위

- '21년 5월 기준 골프장 평균 카트 이용료는 대중제 8.8만원, 회원제 9.25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단위 : 만원)

구분		'11.5월	'16.5월	'21.5월
팀당 카트비	대중제	7.39	7.92	8.80
	회원제	7.92	8.22	9.25

<자료출처 : 레저백서 2021>

※ 미국¹⁾의 경우 1인당 카트 이용료가 1만원에서 2만원 수준이고, 이용요금(그린피)은 약 3만원에서 7만원 수준임. 일본의 경우 카트 이용료를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1인당 주중 이용요금은 평균 6만원 수준임²⁾

- 골프장이 카트 이용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면서 이용료를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어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주요 사례 》

- 노캐디로 이용할 경우 카트비를 9만원에 2만원을 추가하여 11만원으로 폭리를 취하여 골프대중화에 역행하고 있으니 조치 바람('21.6.16. 국민신문고)
- 골프장 전동카트 가격은 천만원 정도이고, 택시는 구입비용이 전동카트의 3배 정도에 연료비에 기사까지 제공하고 있음에도 골프장 카트 이용료는 택시비의 8배에 달함. 그럼에도 골프장에서는 카트이용료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추가적으로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골프대중화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22.1.17. 국민신문고)

□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평일 3일, 주말 4일전까지 위약금 없이 예약 취소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청구하여 다수 민원 발생

* 골프장 표준약관 제6조: 평일 3일전, 주말 4일전 취소시 예약금 전액 환불

《 주요 사례 》

- 4~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예약 신청자들이 많아 골프장에 전혀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취소시 골프장에서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21.11.4. 국민신문고)
- 골프장 이용 4일전에 예약하고 예약 당일 바로 취소요청을 하였음에도, 규정상 취소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불가 및 위약금 10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조치 바람('20.4.7. 국민신문고)

1)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주 20개 대중골프장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1.11월 권역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중골프장 평균 이용요금은 주중 16.1만원, 주말 20.9만원

□ 전문적인 캐디 운영 필요

- 캐디의 자격기준,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으로 캐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캐디 전문성 향상 및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 해소* 필요

* (캐디 불만) 1위: 성의 없는 서비스 및 불친절(54%), 2위: 비싼 캐디피(25%), ('21년, 레저신문)

※ 미국, 일본 등은 체계적인 캐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캐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등급(챔피언십) 취득은 최소 6년, 길면 10년 이상 걸리기도 함

【참고】 군 및 공공골프장 46개소 캐디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2450	268	477	922	748	35
	100%	10.94%	19.47%	37.63%	30.53%	1.43%
남	244	98	113	25	8	0
	9.96%	4.00%	4.61%	1.02%	0.33%	0.00%
여	2,206	170	364	897	740	35
	90.04%	6.94%	14.86%	36.61%	30.20%	1.43%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군 골프장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 운영

- 군 골프장 운영목적은 현역 군인의 체력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 예비역의 복지증진 도모임

※ 군 골프장은 군 체력단련장이라 명명하고 있고, 현재 각 군, 국군복지단 등에서 총 35개소 운영중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

제2조(기본이념) 군 체력단련장은 항상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수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하는 등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병행하여 체력단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제고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전시에는 군수물자를 야적 및 동원병력의 숙영시설 등 작전예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16조(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1. 현역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병
 2.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퇴직한 군무원으로서 연금수급권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1.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2. 군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③ 국방이익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관련자 등은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우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해당하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 그러나, 군인이나 예비역이 아닌 유관기관 업무관련자 등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대우회원 자격을 지나치게 확대

○ 정회원대우

국방부 공무원 및 배우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병무청, 방사청 국장급 공무원, 정책(발전)자문위원 및 배우자, 현역 군인 및 군무원 자녀, 국방부 파견 타부처 공무원 등

○ 준회원대우

대통령 경호실 소속 10년 이상 근속 직원, 골프장 소재지 기관장, 국방부 퇴직 또는 전출 공무원 및 배우자, 병무청, 방사청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자(5년 이내) 등

□ 군 골프장 이용 현황

- 최근 3년간('19~21년) 군 골프장 이용 현황 조사 결과, 일반인*이 전체 63.7%, 현역은 13.1%, 예비역은 18.4%임

* 일반인에는 군인·예비역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공무원근로자 등 회원이 포함

<군 체력단련장 이용자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명)

구분	총계	현역 군인	현역 군인 외			
			소계	예비역	군무원	일반인
이용자수	5,226,725	685,801	4,540,924	959,790	250,930	3,330,204
	100%	13.1%	86.9%	18.4%	4.8%	63.7%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현역 군인의 군 골프장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관급(46.0%), 부사관(45.7%) 등이 이용자의 90% 이상을 차지

<군인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현황(현역, 최근 3년간)>

(단위 : 명)

구분	계	장성급	영관급	위관급	부사관	병
이용자수 (현역)	685,801	15,503	315,660	41,306	313,274	58
	100%	2.3%	46.0%	6.0%	45.7%	0.008%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이용요금과 별도로 코스관리비 징수

○ 군 골프장*은 캐디 미동반 시 코스관리비를 별도로 부과

* 군 골프장은 체력단련장이라는 용어로 국방부 훈령에 따라 운영, 각 군, 국군복지단 등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의 골프장으로 총 35개소 운영 중

- 최근 3년간('19~'21) 26개 군 골프장에서 약 50억원의 코스관리비 징수

<군 골프장 코스관리비 부과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원, 명)

구분	징수액	단가(평균)	징수인원
계	4,992,583,200	4,216	1,184,194
육군	1,089,431,200	2,200	495,196
해군	293,450,000	1,650~5,000	87,381
공군	3,609,702,000	6,000	601,617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

○ 이는 캐디 선택제 확산 등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 반하는 것으로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22.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방안' 마련

- 노캐디·마샬캐디·수동카트 등 캐디 및 카트 선택권 확산 장려 등

《 주요 사례 》

■ 해군 체력단련장은 노캐디 운영방식을 채택하면서 일반 골퍼들에게 사전 공지도 없이 그린보수비(1만원/팀)를 강제로 징수('21.8.8. 국민신문고)

■ ○○공군골프장, 노캐디 고객에 코스관리비 별도 징수 논란

공군 골프장인 ○○체력단련장이 경기보조원 일명 캐디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골프 코스사용료(그린피) 외에 별도의 코스관리비를 징수,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20.10.19. 언론보도)



IV. 개선 방안

1 골프장 예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골프장 예약 금지규정 구체화

- 골프장업자에게 골프장 예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 부과
 -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문체부는 '22.1월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사항 검토중

□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 체계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 여부, 회원의 우선 이용권 보장 여부 등 점검
 - 대중골프장의 금지행위(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부여를 위한 예약 선점 등), 회원제 골프장의 금지행위(비회원 판매를 위한 예약 선점 등) 등에 대하여 주기적 점검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 관련 지침 마련·시달

(지방자치단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문체부는 '22.7.19.부터 대중골프장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조사 실시 예정



□ 사업자의 카트 이용료 폭리 행위에 대한 자발적 개선 유도

- 카트 이용요금을 골프대중화의 취지에 부합하게 정하도록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
- 카트 이용요금이 골프대중화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 강화

⇒ (지방자치단체) 폭리행위에 대한 자발적 개선 유도 방안 마련·시행

□ 위약금 관련 불공정 약관 정비 및 표준약관 사용 유도

- 공정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강화
-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소비자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 마련 시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강화 방안 마련·시행

□ [정책제안] 전문적인 캐디 운영 필요

- 캐디의 자격기준,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등으로 캐디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캐디 전문성 향상 및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만 해소*

* (캐디 불만) 1위: 성의 없는 서비스 및 불친절(54%), 2위: 비싼 캐디피(25%), ('21년, 레저신문)

3 군 골프장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 군 골프장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 운영

- 현역 군인의 체력단련, 예비역 복지 도모 등 군 골프장을 취지에 부합하게 회원 운영

-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자격 기준 등 재정립

⇒ (국방부) 군 골프장 회원 자격 관련 규정 등 개정

□ [정책제안] 군 골프장 운영 및 이용요금 체계 개선

- 다양한 계급의 군인이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장 운영 방식 개선

- 노캐디 이용자에게만 코스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캐디 선택제 확산 등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 코스관리비 부과 의 적정성 여부 등 군 골프장 이용요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여, 합리적 요금 체계 마련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세 부과제	관련기관 (조치기한)
① 골프장 예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골프장 예약 금지규정 마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23.6월)
	○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 체계 구축 ⇒ (문체부) 관련 지침 마련·시달 (지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22.12월)
② 골프대중화를 위한 합리적인 골프장 운영 방안 마련	○ 폭리행위에 대한 자발적 개선 유도 ⇒ 자발적 개선 유도방안 마련·시행	지방자치단체 (‘22.12월)
	○ 위약금 관련 불공정 약관 정비 등 ⇒ 시정조치 강화방안 마련·시행	공정거래위원회 (‘22.12월)
③ 군 골프장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자격 기준 등 재정립 ⇒ 군 골프장 회원 자격 관련 규정 등 개정	국방부 (‘22.12월)

정 본 입 니 다 .

2022. 6. 28.

국 민 권 의 위 원 회



ACRC